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일용직 형틀목공 사망, 영업용 화물차)

소 장

원 고 1. 박○○(주민등록번호)

2. 김○○(주민등록번호)

원고들의 주소: ○ ○ 시 ○ ○ 구 ○ ○ ○ 길 ○ ○ (우편번호)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시 ○○구 ○○길 ○○(우편번호)

회장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 박○○에게 금 ○○○○○원, 원고 김○○에게 금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 가. 원고 박○○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처, 원고 김○ ○는 소외 망 김◉◉의 아들입니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소외 ○○화물주식회사(다음부터 소 외회사라고만 함) 소유의 ○○15타○○○○호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공제계약 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가. 소외 권◈◈는 소외회사의 운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 ○.
 ○. 06:00경 소외회사 소유의 ○○15타○○○○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
 ○○군 ○○면 ○○길 ○○마을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던 중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반대차선의 소외 망 김◉◉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소외 망 김◉◉를 현장에서 사망케 하고 승용차를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 나. 따라서 소외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는 위 사고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에 따라 원고들의 위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 망 김◉◉의 일실수입

소외 망 김◉◉는 19○○. ○. ○. 출생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 ○. ○.현재 나이 ○○세로 통계청발행의 한국인표준생명표에 의하면 기대여명이 ○○년은 되므로 최소한 72세까지는 생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어도 같은 여명내의 만 60세가 되는 해인 20○○. ○. ○.까지 ○○년 ○개월은 더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위 망인은 위 교통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각종 공사장에서 형틀목 공으로 일해왔던 자로서 사고일에 가까운 20〇〇. ○.의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따르면 형틀목공의 1일 평균임금은 금 ○○○원인바,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매월 22일씩 일하여 기대여명내인 60세까지 ○○년 ○개월 동안은 근로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그 소득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위 망인이 상실한 위 소득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단리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그 현가를 계산하면 금 ○○○○○원{형틀목공 1일 시중노임 금 ○○○원×22일×60세까지○○○개월에 대한 단리연금현가표상 수치(호프만수치)}이 됩니다.

여기서 위 망인의 생계비로 3분의 1정도를 공제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 총액은 금 ○○○○○원(위 현가 금 ○○○○○원 ×2/3. 원미만 버림)이 됩니다.

나. 소외 망 김◉◉의 위자료

소외 망 김◉◉가 사망함에 있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피고의 소외 망 김◉◉에 대한 배상책임의 액수는 앞서와 같이 합계 금 ○ ○○○○원(일실수입 금 ○○○○○원+위자료 금 ○○○○원)이 되는바, 그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은 그의 재산상속인들인 원고 박○○에게 금 ○○○○○원(위 합계 금○○○○○원×3/5), 원고 김○○에게 금 ○○○○○원(위 합계 금○○○○○원×2/5)씩 귀속되었습니다.

라. 워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김◉◉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그의 처인 원고 박○○에 대한 위자료는 금○○○원, 그의 아들인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금○○○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 소외 망 김◉◉의 장례비

원고 박○○은 망인의 처로서 그 장례를 치루면서 금 ○○○원을 지출하였는바, 이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박○○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원고 박○○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ㅇㅇ에게 금 ㅇㅇㅇㅇㅇ원(상속분 금 ㅇㅇㅇㅇㅇ원+



위자료 금 ○○○원+장례비 금 ○○○원), 원고 김○○에게 금 ○○○○○원 (상속분 금 ○○○○원+위자료 금 ○○○원)씩을 지급하여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위 돈의 지급과 아울러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7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원고 1. 박〇〇 (서명 또는 날인)

2. 김〇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 할 법 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기 간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ㅇㅇㅇ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불복절차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및 기 간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고용조건 등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연령별 근로자인구 수,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인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3.9.선고 2000다59920 판결).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3.27.선고 90다11400 판결, 1991.4.23.선고 91다6665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 에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

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지연손해금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의무이행 지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음.

※ (2) 소멸시효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민법 제 766조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